

2022년 1월 17일(514호) **HAENAM NEWS**

◆ 군정목표 ◆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

◇ 군정방침 ◇

현장중심 소통행정 살기좋은 부자농촌 체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주는 맞춤복지

발행인: 해남군수발행처: 기획실 주소: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해남군청 대 표 전 화 061)530-5321팩 스 530-5574홈 페 이 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고시·공고· 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공고

•	해남군	공고	제2호	· 2
•	해남군	공고	제64호	10
•	해남군	공고	제147호	11

공 고

해남군 공고 제2022 - 2호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및 공고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91-3번지 일원에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7조(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6.

해 남 군 수

1. 군관리계획 입안내용

- ○위치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91-3번지 일원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4. 공람기간 : 2022. 1. 6. ~ 2022. 1. 20.(14일간)
- 5. 공람장소 : 해남군청 관광실 및 송지면사무소
- 6.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관광실(☎061-530-52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①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지구명	지구의	위 치	제한	Ą	년 적(m	')	최 초	비고
一七	번호	7178	세 분	T 7	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1124
기정	14	땅끝 지구	관광 휴양	송지면 송호리 산91-3번지 일원	_	42,742	_	42,742	전고2009-415 호 2009.10.27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없음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구역명	위 치	제한내용	Ą	년 적(m	')	비고
丁亚	표시 번호	T 4 3	T 1	세반대중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포
기정	17	지구단 위 계획구 역	송지면 송호리 산91-3번지 일원	-	42,742	-	42,74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①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	면 적 (m²)		구성비(%	주요 도입시설
	1 1	기정	변경	변경후)	나파 <u></u> 포티시션
	계	42,742	_	42,742	100.0	
공 공	시 설 용 지	10,603	감)473	10,130	23.7	· 도로, 주차장, 오수처 리장
관 광	소 계	19,229		19,229	45.0	
휴 양 시 설	관 광 시 설	10,914	_	10,914	25.5	· 해양 자연사박물관
용지	휴 양 시 설	8,315	_	8,315	19.5	· 숙박시설
녹 지	시설용지	12,910	증)473	13,383	31.3	· 경관녹지, 조성녹지 (수변녹지 포함)

나. 지구단위계획 세부 결정(변경) 조서 [변경]

			면 적	(m²)		_1 3 4	A -11 -1	7 31-0	
구	- 분	부지	면적	건축면	건축연면	건폐율 (%)	용적률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적	적	(,,,	(,,,	(,,,	
계	총계	42,742	42,742	4,010	14,088	22.5	79.0	100.0	
	소 계	10,603	10,130	_	_	_	_	23.7	
공 공	도 로	7,321	6,848	ı	_	_	ı	16.0	8~12m
시 설	보행자도로	112	112	ı	_	_	ı	0.3	
용지	주차장	3,170	3,170	-	_	_	-	7.4	
	오수처리장	(115)	(115)	1	_	_	ı	(0.3)	(지하)
관 광	소 계	19,229	19,229	4,010	14,088	22.5	79.0	45.0	
휴 양 시 설	자연사박물 관	10,914	10,914	1,429	3,035	15.0	31.9	25.5	
용지	숙박시설	8,315	8,315	2,581	11,053	31.0	139.1	19.5	
노기	소 계	12,910	13,383	_	_	_	_	31.3	
녹 지 시 설	경관녹지	3,075	2,865	_	_	_	_	6.7	원지형보 전
용지	조성녹지	9,835	10,518	_	_	_	_	24.6	조성녹지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총 괄

		,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노선 수	연장 (m)	면적 (m²)									
합	기 정	3	694	7,321	_	_	_	3	694	7,321	_	_	_
계	변 경	3	659	6,848	_	_	_	3	659	6,848	_	_	_
소	기 정	3	694	7,321	_	_	_	3	694	7,321	_	_	_
로	변 경	3	659	6,848	_	_	_	3	659	6,848	_	_	_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7		규		모		어가			사	주요	ラ) ラ	
구분	누이그	严	번 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용 형 태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소 로	2	1	6~12	국지도 로	452	국도77호 선	구역계 남서측 송호리 1309도	일반 도로	_	전고2009-415 호 2009.10.27	진입 도로
기 정	소 로	2	2	8~12	국지도 로	81	국도77호 선	소로2-3	일반 도로	_	전고2009-415 호 2009.10.27	진입 도로
변 경	소 로	2	2	8~12	국지도 로	46	국도77호 선	소로2-3	일반 도로			
기 정	소 로	2	3	8~16.5	국지도 로	161	주차장	소로2-2	일반 도로	_	전고2009-415 호 2009.10.27	진입 도로
변 경	소 로	2	3	8~16.5	국지도 로	161	주차장	소로2-2	일반 도로	_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		• 노선 변경 - 폭원 : 8~12m - 연장 : 81m → 46m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진입도로 설 계 등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2-3		● 노선 변경 - 폭원 : 8~16.5m - 연장 : 161m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진입도로 설 계 등에 따른 선형 변경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위 치	면	. 적(m	i²)	최 초	비고
1 4	분 표시 사 번호		71 71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H ₩						
기정	주①	관광지 주차장	송지면 송호리 1123유 일원	3,170	_	3,170	전고2009-415호 2009.10.27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없음

다. 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л н	도면 표시	지성대	دا دا	면	. 적(m	ť)	최 초	w =
구 분	변호 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녹지①	경관녹 지	송지면 송호리 산91임 일원	3,075	감)210	2,865	전고2009-415 호 2009.10.27	원지형 보전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①	경관녹지	 선형 변경 면적 : 3,075m² → 2,865m² 감)210m²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진입도로 설계 등에 따른 선형 변경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공공편익시설용지 [변경없음]

- н	7) 7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지 번호	위치	면적(m³)	비고
		3,170	1	송지면 송호리 1123유 일원	3,170	주차장
	1	112	2	송지면 송호리 1123-17임 일원	112	보행자도로
		(115)	3	송지면 송호리 1123-1유 일원	(115)	오수처리장 (지하)
	계	3,282			3,282	

나. 관광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번호	번호	면 적(m')	획지 번호	위치	면적(m²)	비고
	2	10,914	1	송지면 송호리 1123-3양 일원	10,914	자연사박물 관
,	계	10,914			10,914	

다. 휴양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도면 번호	번호	면 적(m')	획지 번호	위치	면적(m²)	비고
	3	8,315	1	송지면 송호리 산91임 일원	8,315	숙박시설
,	계	8,315			8,315	

라. 녹지시설용지 [변경]

도면	가구	_{가구} 면 적(m²)						
번호	번호	기정	변경	획지	위치	면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3,075	2,865	1	송지면 송호리 산91임 일원	3,075	2,865	경관녹지
	4	9,835	10,518	2	송지면 송호리 1123-4잡 일원	9,835	10,518	조성녹지 (수변녹지 포함)
	계	12,910	13,383			12,910	13,383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관광시설용지

구 분	도면번 호	시설명	구	분	계 획 내 용			
		자연사 박물관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의 전시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1-1		건 폐 율			• 30% 이하		
관 광			용 2	척 율	• 80% 이하			
시설			높	$\circ]$	• 3층이하			
용 지			배	치	• 주변시설과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 주조색 : 군청색(7.8PB			
			 색	채	3.1/3.5)			
				- 11	• 보조색 : 흑청색(5.7PB			
					5.0/3.2)			

나. 휴양시설용지

구 분	도면번 호	시설명	구	분	계 획 내 용									
	1-2	숙박시설	8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다목의 가,나시설과 비슷한 것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 40% ০) ঠ									
휴 양			용 적	율	• 200% 이하									
시설			높	ो	• 7층이하									
용 지			明	치	• 주변시설과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 주조색 : 설백색(6.2G			
			색	채	8.8/0.5) • 보조색 : 지백색(6.0Y									
					9.0/1.3)									



5 교통처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u>_</u>	년 행 동 선	• 일반적인 동선만을 표현하여 자유로운 단지 배치 유도		
	차량출입불허구간	• 주출입구를 제외한 차량출입 불허		
차량동선 및 주 차	차량출입지정구간	• 단지 진출입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입로의 적정 위치 지정		
, ,	주 차 장	• 관광휴양지내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해남군 공고 제2022-64호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 대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1. 6.

해 남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수

(2022. 1. 12.까지 적용, 2021. 12. 31.기준)

(단위:명)

구 분	19세 이상 주민수 (A)	19세 이상 선거권 없는 주민수 (B)	외국인 수 (C)	청구권자 총 수 (D=A-B+C)	연서대상 주 민 수 (1/50)
해남군	59,136	95	47	59,088	1,182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주민총수

(2022. 1. 13.부터 적용, 2021. 12. 31.기준)

(단위:명)

구 분	18세 이상 주민수 (A)	18세 이상 선거권 없는 주민수 (B) (C)		청구권자 총 수 (D=A-B+C)	연서대상 주 민 수 (1/50)
해남군	59,692	95	47	59,644	1,193

해남군 공고 제2022 - 147호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산지관리법』제18조의5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허가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1. 12.

해 남 군



연번 -	신청인	소]청지		면적	d (m²)	용도	
	성명	소재지	지번	지번 지목		신청면적	송도	
1	주식회사 조OOO	황산면 옥동리	산68-5	임야	3,359	2,760	동식물관련시설 (해삼양식 시험연구시설)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 공고기간: 2022. 1. 13. ~ 2022. 1. 27.

○ 이의신청 방법

-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1월 27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자(1. 가옥의 소유자,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주민, 공장의 소유자,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는 위 공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아래의 이의신청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해남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500미터 이내 가옥의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
- ※ 위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의 의견수렴은, 산지의 전용면적이 30,000㎡ 이상에만 해당되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 사업지 인근 묘지 및 농지등의 피해방지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공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치도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산68-5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5.12.30.>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사업	목적)					
사업자성명(법인명)					
사업자주소						
사업소재지						
	주소 사업명(사업·사업자성명(시)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명(사업목적) 사업자성명(법인명) 사업자주소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명(사업목적) 사업자성명(법인명) 사업자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사업목적) 사업자성명(법인명) 사업자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사업목적) 사업자성명(법인명) 사업자주소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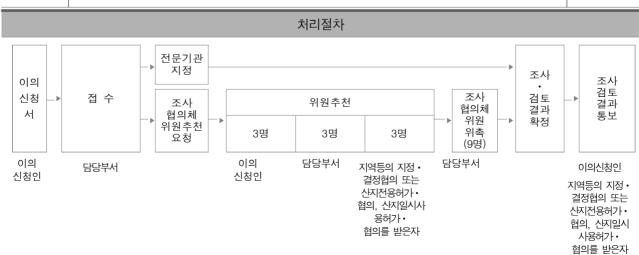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개하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허가·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